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 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바.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사.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법 제13조”를 “법 제12조,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보며,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한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제67조의11부터 제67조의14까지로 하고,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12(종전의 제67조의3)제3항 중 “별표 4의2와”를 “별표 4의3과”로 하고, 제67조의3부터 제6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등)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7조의4(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의5(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다만,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제67조의2제1항의 검토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사업

2. 별표 4(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6(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 ①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을 10일 이상 게시(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군·구 및 승인기관에게 그 내용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

②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와 반영 여부를 사업자에게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 결과를 통보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67조의7(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① 법 제52조의3제
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계획

나.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결과

다.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방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
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8(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 통보) 법 제52
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
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7조의9(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① 환
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기관등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의10(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 변경) 법 제5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5제1항제1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라.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마.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배출량 미만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거나 신규 배출되는 경우

2. 제67조의5제1항제2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나.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

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77조제1항제18호가목 중 “관한”을 “관한 사항과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나, 라, 마, 사목을 삭제하고, 다, 바목을 나, 다목으로 하며, 비고 제7호 및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별표 4의2를 4의3으로 하고,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층·신속평가 검토기준(제6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5제2항 관련)

1. 심층·신속평가 대상 검토를 위한 영향인자

가. 자연환경 영향인자

-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2) 「습지보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1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1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1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15)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
- 16)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역

나. 생활환경 영향인자

- 1)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 유무
 -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한한다)

마)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시설에 한한다)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한한다)

2) 사업계획에 다음 배출시설 포함 여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 심층평가 검토기준은 영 제67조의2제1항의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제1호가목의 자연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다만, 제1호가목17)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역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판단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제1호나목의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

3. 신속평가 검토기준은 영 제67조의5 각 호의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 검토기준에서 제외한다.

가. 다음의 1)·2)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제1호가목의 자연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다만, 제1호가목17)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역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판단한다.)

2)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 제1호나목의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나.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또는 별표 3 개정전에 승인받은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 협의는 법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말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 중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를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날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술인력

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를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비고에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 대상에서”를 “환경영향평가업의 직원으로 고용된 대상에서”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을 “직원으로 고용된”으로 하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을 “직원으로 고용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호 및 제7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초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u>법 제8조제1항제5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u>법 제8조제1항제6호</u> ---		
1. 삭 제		-----		---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①·② (생 략)		제10조의2(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u>법 제11조</u> ,		③ -----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		-----		
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의 규정을 준용하되, <u>법 제13조</u>		----- <u>법 제12조</u> ,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		<u>제13조</u> -----		
렴과 <u>법 제16조</u> 에 따른 협의 요		-----		
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u>이 경</u>		-----.		
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		-----.		
<u>전략환경영향평가</u> ”로 본다.		<u>이 경</u>		
		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		
		<u>전략환경영향평가</u> ”로, “전략환		
		<u>경영향평가서 초안</u> 은 “약식전		
		<u>략환경영향평가서</u> ”로 보며, <u>법</u>		
		<u>제12조제2항제1호</u> 에 대한 의견		
		<u>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u>		

<신 설>

제67조의2(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등)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67조의4(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7조의5(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신 설>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다만,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제67조의2제1항의 검토대
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
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
가·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
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사업

2. 별표 4(다만, 「자연환경보전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의 협의 대상사업은 제외
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6(신속평가 대상사업 결
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 ①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을 10일 이상 게시(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군·구 및 승인기관에게 그 내용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

②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

<신 설>

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사업자에게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67조의7(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계획

나.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결과

<신 설>

<신 설>

다.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방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8(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 통보)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7조의9(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기관등에 의견

<신 설>

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의10(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 변경) 법 제5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5제1항제1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u>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u> <u>라.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u> <u>마.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배출량 미만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거나 신규 배출되는 경우</u> <u>2. 제67조의5제1항제2호의 신속 평가 대상사업</u> <u>가.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u> <u>나.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u>
<u>제67조의2</u> (생략)	<u>제67조의11</u> (현행 제67조의2와 같음)
<u>제67조의3</u>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② (생략)	<u>제67조의12</u>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u>별표 4 의2와 같다.</u> <u>제67조의4</u> · <u>제67조의5</u> (생략)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 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7. (생략)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협회의의 구성·운 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u>관한</u> 사항 은 제외한다) 나. ~ 도. (생략) ② ~ ⑨ (생략)	③ ----- ----- <u>별표 4 의3과</u>-----. <u>제67조의13</u> · <u>제67조의14</u> (현행 제 67조의4 및 제67조의5와 같음)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가. ----- ----- ----- ----- <u>관한 사항</u> <u>과 법 제52조의3제2항에</u> <u>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u> <u>에 관한</u> ----- ----- 나. ~ 도.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71